

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 제조기업을 위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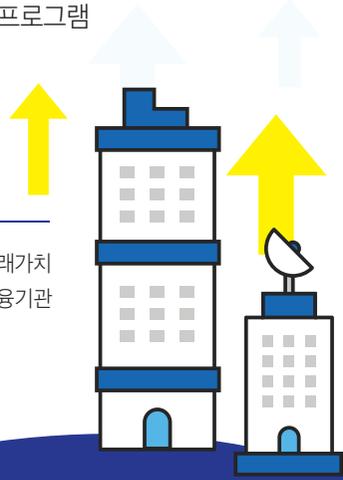
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프로그램

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한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
대출 실행 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



보증지원이란?

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성, 시장성, 사업성 등 미래가치
위주로 평가하여 대출액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
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자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



주요 보증혜택



보증실행시 최초 3년간
보증비용 100% 적용



기업별 보증료율에서
0.2%p 감면

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
1

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대상 사업장 세부 기준



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**중소 제조기업** 중

다음 각 호의 공단 사업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, 공단에서 정한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
* **중소 제조기업** |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-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등록기업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
| 사업명 | 지원 대상 | 지원 가능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안전보건경영시스템 (KOSHA18001) | ‘17.1.1 이후 인증 기업 | 인증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|
|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| ‘18년도 협력 기업 | ~19.12.31. |
|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·확인심사 | ‘18년도 적합판정기업 | ~19.12.31. |
| 위험성평가 인정 | ‘17.1.1 이후 인정 기업 | 인정 유지기간 종료 시까지 |
| 안전 신기술 스타트업 육성 | ‘18.1.1 이후 공모전 선발 기업 | 공모전 수상일로부터 3년 |

예시

- ① ‘17.3.20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18001) 인증기업은 인증 유효기간(3년) 시점인 ‘20.3.19. 까지 보증신청 가능
- ② ‘18년도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‘19.12.31 까지 보증신청 가능
- ③ ‘18년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·확인심사 적합판정 기업은 ‘19.12.31 까지 보증신청 가능
- ④ ‘19.3.10.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은 인정 유지기간인 ‘22.3.9.까지 보증신청 가능
만약 위험성평가 인정 사후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은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
- ⑤ ‘18.6.3. 안전 신기술 공모전 수상기업은 유효기간인 ‘21.6.2.까지 보증신청 가능

2

사업 진행 절차



보증신청 / 상담

취급자 | 신청기업 영업팀장

보증신청

인터넷 홈페이지 내 사이버영업점
(<http://www.kibo.or.kr>)
영업점 방문

상담

영업점 고객센터 ☎ 1544-1120



서류접수

취급자 | 평가담당자

기술사업계획서 등 준비서류 제출

▶ 여타 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 직원이 직접 수집



현장평가

취급자 | 평가담당자

현장평가 실시

▶ 기술개발 능력, 제품화 능력, 생산 능력 및 경영상태 등



심사 / 승인

취급자 | 평가담당자

기업의 기술력, 사업전망, 경영능력, 신용상태 등을 고려 승인 여부 결정



보증서 발급

취급자 | 평가담당자

보증약정 후 보증서 (전자보증서) 발급

▶ 보증서 발급 소요기간

서류접수 후 현장조사일 (본평가일)로부터 약 4~6일 소요

▶ 보증료 산정

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

보증료율은 기업의 평가등급, 보증금액, 이용기간,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

동 사업대상 안전경영활동 우수 제조기업은 기업별 보증료율에서 0.2%p 감면



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프로그램

▶ 유의사항

- 기업 신용 및 경영상태가 기술보증기금 지원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지원이 실행되지 않음
- 각 사업별 기준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금융기관 여신 실행이 완료된 건에 한해서 지원

▶ 보증지원 제한기업 사례 예시

- 01 휴업중인기업
- 02 채무관계자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 또는 대표이사인 기업
- 03 기업, 대표자, 실제경영자, 주력기업이 신용관리정보대상자
- 04 파산·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있거나 청산 들어간 기업
- 05 대출금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
- 06 금융부조리 관련기업
- 07 기금,신보,재단 보증사고기업
- 08 기금사고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이거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
- 09 기금·신보·재단에서 채권변제 받지못한 기업
- 10 9호 기업의 이사, 업무집행자, 업무집행사원, 대표(공동경영자 포함), 실제경영자가 대표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있는 기업
- 11 9호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있는 기업
- 12 기보 보증이용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기업
- 13 기보 보증금액이 15억을 초과하는 기업
- 14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미 사용 중인 기업

※ 상기항목들은 보증진행불가의 대표적인 경우이며 상세한 내용은 각 지점에서 상담 후 보증지원 여부가 결정됨.